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제 목 **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안내**

1.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-2000(2020.11.2.) 및 서전버조 제20-262호 (2020.10.15.)와 관련입니다.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(10.13)을 위반할 경우 2020.11.13.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※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(과태료)

- 과태료 10만원 이하 (관리자·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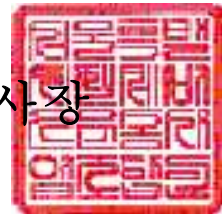
3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량 이용승객의 비상상황(마스크 끈 훼손, 마스크 오염, 마스크 분실 등)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량의 마스크가 비치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절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: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0-276호 (2020.11.10.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